

광일고등학교 포상 규정

제 1 차 개정 2020. 01. 08.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 1 차 개정 2020. 03. 05.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1조【구성과 심의】 사정회는 학년말에 전체 교원으로 구성하고, 학년말의 성적을 근거로 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교내·외 포상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제2조【사정안 제출】 각 학급 담임은 사정회 개최 전까지 사정안을 교육기획부에 제출한다.

제3조【효력】 사정회의 각종 심의 사항은 학교장의 최종 결재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유급】 결석 일수가 총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상인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

제5조【포상】 학생의 포상은 교직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직원회의가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정으로 각 부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전체 직원회의의 심사를 대신 할 수 있다.

1. 학력부문 : 교과 우수상
2. 모범부문 : 이사장상, 공로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4.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6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7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8조【학력부문】 1·2학기 성적을 합산하여 ‘교과 우수상’을 수여한다.

1. ‘교과 우수상’ 수상자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수강 학생수가 1~25명이면 1명 수상,
 - ② 수강 학생 수가 26~50명이면 2명 수상,
 - ③ 수강 학생 수가 51~75명이면 3명 수상,
 - ④ 수강 학생 수가 76~100명이면 4명 수상,
 - ⑤ 수강 학생 수가 100명을 초과하면 ①, ②, ③, ④ 방식으로 산정한다.
2. ‘교과 우수상’의 수상 대상자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①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학기별 성취도가 모두 ‘B’ 이상인 학생
 - ② 총 결석 일수가 미인정 결석 3일 이하, 질병 결석 14일 이하인 학생
(지각,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함)
 - ③ 해당 학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자와 생활선도협의회에서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교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④ 단일학기 교과는 해당 학기 성적으로 산출한다.
 - ⑤ 동일 교과로 학기별 단위수가 다른 경우 단일 교과로 인정한다.
 - ⑥ 수상자 선정은 진급, 졸업사정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 ⑦ 동점자 발생으로 수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동점자 모두 제외한다.

제9조【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해당 학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자와 생활선도협의회에서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교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① 이사장상 : 학업성적이 비교적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학교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며 학생활동 등 각 분야에 걸쳐 학교발전과 명예를 드높이는데 가장 높은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② 공로상 : 재학 중 교풍 확립에 공이 현저하고 학생회 및 각 부문의 활동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학교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에게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 ③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④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⑤ 봉사상 : 봉사심이 투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봉사 실적이 남다르게 뛰어난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10조【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도 수여할 수 있다.

-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②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이 3회 미만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회로 간주한다.
- ③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1조【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 ① 이사장상, 교과 우수상의 수상 대상자가 없거나 극소수일 때는 사정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② 전, 편입학생은 학기말 성적이 완료되어 석차와 성취도만 이송될 경우, 전입시점에서 원적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원점수를 요청하여 학년말에 교과 우수상을 수여한다.
- ③ 기타 유관기관에서 주는 상은 성적 우수자, 공로가 많은 자의 순으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추천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고, 상급 기관의 지침에 의한 규정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한다.

부 칙 (2021. 03. 05) 이 규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광 일 고 등 학 교 장